

의정활동동영상

- 제260회 임시회(2013. 1. 23 ~ 2. 1)
- 제261회 임시회(2013. 3. 13 ~ 3. 26)





의정활동보고서



제261회 임시회(2013. 3. 13 ~ 3. 26)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10일간의 첫 임시회 후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
으로 제261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절기상으로는 우수, 경칩이 지나고 활력이 넘치는
3월의 완전한 새봄을 맞이하여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사업초기 단계부터
현장방문과 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해 경북도에서는 낙동강 사업의 성공적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다문화 정책의 선도적 실천 등의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관용 도지사
께서 영예로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셨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건강한 학교조성과
주 5일 수업제 정착,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충실한
육성, 직업교육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고졸 취업 성공

시대를 열어가는 등 최고의 경북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에는 제18대 박근혜 새 정부가 출범 하였습니다.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에서도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는 우리 지역민의 숙원과제들을 발굴하여 지역과 국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기회는 금년 들어 처음으로 도정질문이 실시됩니다. 질문하는 의원님께서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현안 과제에 대하여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과 함께 적극적인 대안과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도정 및 교육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때마침 단비인 봄비가 내렸지만 3월부터 5월까지는 건조한 관계로 도내 곳곳에 산불발생과 해빙기 안전 사고 등 우리 도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 행정력을 모아 예방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정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차 례

I. 개 황	117
II. 의사일정	121
III. 의안처리	127
IV. 민원처리	129
V. 본회의 보고사항	131
VI. 5분 자유발언	153
□ 박진현 의원(기획경제위원회/영덕)	153
□ 채옥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포항)	156
□ 이왕식 의원(건설소방위원회/의성)	160
□ 홍진규 의원(건설소방위원회/군위)	163
□ 김희수 의원(기획경제위원회/포항)	166

부 록

<input type="checkbox"/> 조례안(12건)	173
<input type="checkbox"/> 규약안(1건)	224
<input type="checkbox"/> 동의안(1건)	239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61회 임시회는 2013년 3월 13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3월 26일까지 14일간의 회기 동안 3차의 본회의와 6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3월 13일(수)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2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뒤이어 이어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농수산위원회 광광섭 의원은 “강정고령보 우측교 차량통행 관련”과 “도내 결핵 관리 실태 및 대책방안”, “지역 뿌리산업 육성” 및 “농산 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김희원 의원은 “귀어인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및 “독도관련 행사 양성 지원”과 “낙동강 살리기사업 후속조치” 및 “장학사 선발시험 관련” 등에 관한 폭넓은 도정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교육위원회 박태환 의원이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비용 확보방안” 및 “유사취발유 근절 대책 방안”과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활성화 방안” 및 “불균형한 남녀 화장실 개선방안”과 관련한 도정질문을

하였으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고우현 의원은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지원”에 관련된 질문을 문화환경위원회 김명호 의원은 “새정부 출범 즈음 세계체제개편과 한국민주주의, 경북의 미래에 관하여”와 “3.1만세운동 기념 및 6.25참전 유공자 예우 문제”,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 및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의원은 “지진해일 대피소 및 방사성물질 누출 주민 구호소 설치”와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및, “울진 임대주택 공급” 등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질문을 하였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6일(화) 오전 11시 개의에 앞서, 「천안함 피격사건 3주기」를 맞아 전사한 46명의 해군 장병들과 故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일제히 묵념을 올렸으며, 이어서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의원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관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채옥주 의원의 “청소년 문제예방을 위한 감사운동 전개 촉구”, 건설소방위원회 이왕식 의원의 “참전유공자의 사회적 예우와 지원”과 홍진규 의원의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대한 정책적 제언”,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의 “산불대응 시스템 및 보상대책”에 관한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안건심사에 있어서는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등 총 14건을 의결하였다.

조례안 중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중국 섬서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

이 밖에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및 현지 확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투자 유치 분야의 요트산업의 미래비전을 가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주)한국수자원공사 산하기관인 김포 아라마리나를 방문하여 경북도 관련 사업의 접목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모범 복지시설 운영사례로 꼽히고 있는 거제 애광원과 통영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교육재활 및 직업 재활프로그램 등 운영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민생현장 속에 파고들어 도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솔선 지원해주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포스코환경감시센터, 임산버섯이용 대사성 질환 신약 후보물질 개발연구 현장, 사방기술원 조성지를 찾아 사업 추진실태와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연구개발 수행에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효율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세계제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득작목으로 이끌어 가기를 당부하였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영주 농업회사법인인 '들풀' 및 울진 민물고기연구센터와 엑스포공원 내 농어촌테마파크 조성현장을 둘러보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객 유치에 경북도와 울진군이 힘을 모아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제주혁신도시사업 건설현장, 해안도로 현장 등을 둘러보며 우수시책 및 문제점 등의 사안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 및 조성방안 등과 연계·모색하며 2013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함께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특수학교 건립지역인 경산을 비롯하여, 경주 글로벌예절체험관과 울진 원자력 마이스터고를 방문하여 당면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폈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학벌위주에서 능력위주로 바뀌어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교육철학이 교육현장에 살아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키워줄 것을 당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3년 3월 13일(수)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3년 3월 13일 ~ 3월 26일(14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3회(누계 61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회	6	1	1	1	1	.	1	1	.	.
누계	352	28	45	46	39	31	44	38	41	40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3(수) 14: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input type="checkbox"/>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광섭 의원(농수산위원회) ○ 김희원 의원(건설소방위원회) 	
3. 14(목)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태환 의원(교육위원회) ○ 고우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3. 26(화) 11:00 (제3차)	<input type="checkbox"/>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진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채옥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이왕식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홍진규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김희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6(화) 11:00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섬서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4(목) 10:00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3(수) 본회의 종료 후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 규약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 동의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섬서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3. 20(수) ~ 3. 22(금)	<input type="checkbox"/> 현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서울소재 재래시장, 서울지사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0(수) 11:00	<input type="checkbox"/> 조례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1(목) ~ 3. 22(금)	<input type="checkbox"/> 현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시도 복지시설 주요 현장 비교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제 “애광원” - 통영시 종합사회복지관 	

〈문화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3(수) 본회의 종료 후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3. 15(금)	<input type="checkbox"/> 현지확인 ○ 친환경 산업시설 방문 및 산림환경업무 추진 점검	
3. 21(목) ~ 3. 23(토)	<input type="checkbox"/> 현지확인 ○ 타시도 문화·환경 주요 현장 비교 견학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3(수) 11:00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친환경 무상학교 급식 추진상황 보고	
3. 19(화) ~ 3. 20(수)	<input type="checkbox"/> 현지확인 ○ 양계가공공장 들फल(영주시 소재) ○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 ○ 농어촌테마공원(울진 청정생태농업EXPO)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4(목) 본회의 종료 후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3. 19(화) ~ 3. 21(목)	<input type="checkbox"/> 현지확인 ○ 제주도의회, 제주혁신도시사업 건설현장 등	

<교육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4(목) 본회의 종료 후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input type="checkbox"/>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업무보고	
3. 18(월) ~ 3. 19(화)	<input type="checkbox"/> 현지확인 ○ 경산특수학교 설립 추진 상황 ○ 인성교육 추진 실태(글로벌예절체험관) ○ 마이스터고 운영 현황(평해공고)	

Ⅲ. 의안처리

※ ()내는 제9대 의회 누계임.

구 분	접수 (부의)	심의·의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 결		부결				
			원 안	수 정					
계	14 (388)	15 (380)	10 (301)	5 (75)	(4)	(3)	(5)		
조 례 안	소 계	10 (254)	12 (216)	7 (152)	5 (60)	(4)	(3)	(5)	
	의회 제안	6 (93)	8 (88)	5 (65)	2 (23)		(2)	(3)	
	도지사 제출	2 (87)	2 (84)	2 (62)	(21)	(1)	(1)	(2)	
	교육감 제출	2 (44)	2 (44)	(25)	2 (16)	(3)			
규 칙 안	(3)	(3)	(3)						
예산·결산	(21)	(21)	(6)	(15)					
동의·승인	2 (32)	2 (32)	2 (32)						
건의안	(3)	(3)	(3)						
결의안	(34)	(34)	(34)						
기 타 안	1 (71)	1 (71)	1 (71)						

□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5건)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안
(’11. 4. 22. 농수산위원회 상정유보)
-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7. 7. 이 달 의원, ’11. 8. 3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안
(’12. 8. 31.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2. 11. 전찬걸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2. 17. 황이주 의원 외 3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4		4	3	1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5 (99)		1		1	1		1	1	
의 회 영	(1)									
기 경 회 제	1 (13)					1				
행 정 보 건 복 지	2 (18)		1						1	
문 화 환 경	(8)									
농 수 산	(3)									
건 설 소 방	2 (51)				1			1		
교 육	(5)									
특 별 위 원 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5 (99)	5 (99)				
의회운영						
기획경제	1	1				
행 정 보건복지	2	2				
문화환경						
농 수 산						
건설소방	2	2				
교 육						
특별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 2011. 6. 1부터 타기관 민원은 상임위 회부전 이송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12건(조례안 10, 동의안 2)

제출·발의자 (제출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의회운영위원회 (2013. 3. 18)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2013. 3. 18)
구자근 의원 외 3명 (2013. 3. 4)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기획경제 (2013. 3. 4)
경상북도지사 (2013. 3.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
"	중국 섬서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3. 3. 4)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권영만 의원 외 4명 (2013. 3. 4)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찬걸 의원 (2013. 3. 4)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환경 (2013. 3. 4)
장경식 의원 (2013. 3. 4)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희수 의원 외 3명 (2013. 3. 4)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 (2013. 3. 4)
경상북도교육감 (2013. 3. 4)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교육 (2013. 3. 4)
"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2. 조례공포 사항 : 8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3. 2. 1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2013. 2.18 (제3398호)
"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3399호)
"	"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제3400호)
"	"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3401호)
"	"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제3402호)
"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 (제3403호)
"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3404호)
"	"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3405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의회운영 위 원 회	2. 13 ~ 2. 15	제 주 도 (롯데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합동 연찬회 - 지방의회 위상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 화합만찬 및 한마음 체육행사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도 단위 행사】

- 2013년도 입법정책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3. 2. 1(금) 14:00
 - 장 소 : 도의회 제2별관 세미나실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전찬걸·장두욱
위원장, 고우현·김영기·박기진·이상용·장세현·
김말분·김봉교·김명호·김창숙·김희수·
나현아·박권현·박태환·서정숙·이경임·
이왕식·정영길·홍진규 의원

- 안전문화 실천 캠페인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2. 4(월) 11:00
 - 장 소 : 안동 중앙신시장
 - 참 석 : 이영식 의원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3. 2. 4(월) 15:30
 - 장 소 : 전라북도의회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13. 2. 4 ~ 2. 8
 - 장 소 : 도내 사회복지시설 64개소
 - 참 석 : 전 의원

- 의회사무처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2. 6(수) 11:00
 - 장 소 : 칠곡 왜관시장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희원·추재천 의원

- 2013 경북유림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3. 2. 13(수) 10:30
 - 장 소 : 안동리첼호텔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기홍·김영기·이상용·김명호·
이영식·홍광중 의원

- 구미공단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취업 박람회 참석
 - 일 시 : 2013. 2. 14(목) 11:00
 - 장 소 : 금오공고
 - 참 석 : 윤창욱·박태환 의원

-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3. 2. 15(금)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한재석 의원

- 경북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2. 18(월) 11:00
 - 장 소 : 만촌 호텔인터불고
 - 참 석 : 송필각 의장

- **경북농업마이스터 대학 입학식 참석**
 - 일 시 : 2013. 2. 18(월) 14:00
 - 장 소 : 군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 참 석 : 홍진규 의원

- **경상북도 여성기업인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3. 2. 19(화) 11:00
 - 장 소 : 김천 탑웨딩타운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배수향 의원

- **에코 경북! 일자리창출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3. 2. 19(화) 11:30
 - 장 소 : 상주시민체육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강영석·한재석 의원

- **도-시군 합동 투자유치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3. 2. 19(화) 13:00
 - 장 소 : 울진덕구온천호텔
 - 참 석 : 황이주 의원

- **독도바로알기 특별강연회 참석**
 - 일 시 : 2013. 2. 20(수) 14:00
 - 장 소 :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 참 석 : 김영식·김창숙·윤성규 의원

- **2013 보건·환경분야 전문가 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3. 2. 20(수) 15:00
 - 장 소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 **2013 대구경북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3. 2. 21(목) 14:00
 - 장 소 :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채옥주 위원장

- **도청이전 및 후적지 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3. 2. 21(목) 14:00
 - 장 소 : 도의회 제2별관 세미나실
 - 참 석 : 이영식 의원

- **경북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2. 21(목) 18:30
 - 장 소 : 수덕웨딩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 **다케시마의 날 규탄성명서 발표**
 - 일 시 : 2013. 2. 22(금) 09:30
 - 장 소 : 의회 도민의 방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수용 위원장, 장경식·장세현·서정숙 의원

- **다케시마의 날 포항시민 규탄 결의대회 참석**
 - 일 시 : 2013. 2. 22(금) 14:00
 - 장 소 : 포항시청 앞 광장
 - 참 석 : 송필각 의장, 채옥주·장두욱 위원장, 장경식·장세헌·김원석·이정호·한창화 의원

- **“경상북도 건강행복 추진기획단” 공공의료발전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3. 2. 22(금)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이경임 의원

- **제39차 경상북도 간호조무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참석**
 - 일 시 : 2013. 2. 23(토) 11:00
 - 장 소 : 대구 신라웨딩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 **지역교육청 교육장 회의 참석**
 - 일 시 : 2013. 2. 25(월) 10:00
 - 장 소 : 안동교육지원청
 - 참 석 : 홍광중 의원

- **더불어 낙동강프로젝트 그랜드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3. 2. 25(월) 10:3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윤창욱 의원

○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2. 25(월) 11:00
- 장 소 : 국회의사당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박병훈·박진현·채옥주·전찬걸·정상진·장두욱·김수용 위원장, 김기홍·고우현·이상용·장경식·김봉교·도기욱·박권현·변우정·서정숙·심정규·윤성규·이왕식·정영길·홍진규 의원

○ 탄자니아 키코브웨니 새마을회관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3. 2. 25(월) ~ 3. 3(일)
- 장 소 : 탄자니아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고우현·김창숙·이태식 의원

○ 한국노총 제35차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 일 시 : 2013. 2. 26(화) 10:00
- 장 소 : 구미근로자문화센터
- 참 석 : 구자근 의원

○ 생활개선도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2. 26(화) 11:00
- 장 소 : 농업인회관 3층 강당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광광섭·이경임·정영길·최학철·한창화 의원

- **한국유네스코경상북도지회 이사회 참석**
 - 일 시 : 2013. 2. 26(화) 18:00
 - 장 소 : 포항시 한독직업훈련학교
 - 참 석 : 김원석 의원

- **경북능금농협 대의원대회 참석**
 - 일 시 : 2013. 2. 27(수) 11:00
 - 장 소 : 능금농협 군위 사과주스공장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 **의원연구단체 자연공원생태연구회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13. 2. 27(수) 13:30
 - 장 소 : 칠곡군 교육지원청
 - 참 석 : 윤창욱 · 장세현 · 김희원 · 서정숙 · 심정규 · 추재천 · 홍진규 의원

- **제94주년 3.1절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3. 1(금) 10:00
 - 장 소 : 상주문화회관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강영석 · 이경임 · 한재석 의원

- **제6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취임식 및 2013년도 입학식 참석**
 - 일 시 : 2013. 3. 4(월) 10:30
 - 장 소 : 경북도립대학교 문화체육관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채옥주 위원장

- 원자력마이스터고 개교식 및 입학식 참석
 - 일 시 : 2013. 3. 4(월) 11:00
 - 장 소 : 울진 평해중·공업고등학교
 - 참 석 : 전찬걸 위원장, 황이주 의원

-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 참석
 - 일 시 : 2013. 3. 5(화) 10:00
 - 장 소 : 문경관광 사격장
 - 참 석 : 고우현 의원

- 경북경영자총연합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3. 3. 5(화) 11:00
 - 장 소 : 구미 센추리호텔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3. 3. 5(화) 14:00
 - 장 소 : 구미 호텔금오산
 - 참 석 : 윤창욱·이태식·장영석 의원

- 농민사관학교 합동개강식 참석
 - 일 시 : 2013. 3. 5(화) 15:00
 - 장 소 : 경운대 벽강아트센터
 - 참 석 : 송필각 의장, 정상진 위원장, 광광섭·변우정·정영길·한창화 의원

- **도립국악단 제114회 정기연주회 “여민락” 참석**
 - 일 시 : 2013. 3. 5(화) 19:30
 - 장 소 :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 참 석 : 김창숙 의원

- **경상북도 원자력안전협의회 창립총회**
 - 일 시 : 2013. 3. 6(수) 10:30
 - 장 소 : 대구 만촌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병훈·박진현·전찬걸 위원장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 일 시 : 2013. 3. 6(수) 14:00
 - 장 소 : 경주현대호텔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박병훈 위원장,
이 달 의원

-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3. 8(금) 11:00
 - 장 소 : 농업인회관 3층
 - 참 석 : 송필각 의장, 정상진 위원장, 권영만·강영석·
곽광섭·나기보·나현아·변우정·이정호·
정영길·최학철·한창화 의원

- **경상북도 재향군인회 제54차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3. 3. 8(금) 11:30
 - 장 소 : 육군3사관학교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 제5기 경북도청노조 출범 1주년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3. 8(금) 16: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제3기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3. 3. 11(월) 13:00
 - 장 소 : 대구 EXCO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곽광섭 · 한창화 의원

- 의원연구단체 균형발전연구회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13. 3. 11(월) ~ 12(화)
 - 장 소 : 전남 나주, 남악신도시
 - 참 석 : 박진현 · 전찬걸 위원장, 이상용 · 도기욱 · 박태환 ·
이경임 · 정영길 의원

【시·군 단위 행사】

- 경북 구미태권도협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2. 2(토) 18:00
 - 장 소 : 구미 호텔비에스
 - 참 석 : 윤창욱 의원

- 안동소방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 일 시 : 2013. 2. 4(월) 13:00
 - 장 소 : 안동 선산재활원
 - 참 석 : 김명호 의원

- 포항교육지원청 실적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3. 2. 4(월) 14:00
 - 장 소 :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
 - 참 석 : 김원석 의원

- 동명초 강당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3. 2. 6(수) 10:00
 - 장 소 : 칠곡동명초등학교
 - 참 석 : 추재천 의원

- 울진교육지원청 실적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3. 2. 6(수) 10:00
 - 장 소 : 울진교육지원청
 - 참 석 : 홍광중 의원

- **경주위덕대 학위전수식 및 졸업식 참석**
 - 일 시 : 2013. 2. 6(수) 14:00
 - 장 소 : 위덕대학교 강당
 - 참 석 : 최우섭 의원

- **2013년도 울진교육실적보고회 및 울진교육상 시상식**
 - 일 시 : 2013. 2. 6(수)
 - 장 소 : 울진청소년수련관
 - 참 석 : 전찬걸 위원장

- **군위교육지원청 실적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3. 2. 7(목) 13:30
 - 장 소 : 군위삼국유사문화회관
 - 참 석 : 박태환 의원

- **북삼고등학교 졸업식 참석**
 - 일 시 : 2013. 2. 8(금) 10:00
 - 장 소 : 본교 강당
 - 참 석 : 김희원 의원

- **포항 용흥동 한국자유총연맹 월례회 참석**
 - 일 시 : 2013. 2. 12(화) 오전
 - 장 소 :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한국자유총연맹
 - 참 석 : 김희수 의원

- **김천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3. 2. 15(금) 10:00
 - 장 소 :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강당
 - 참 석 : 나기보 의원

- **문경시 기관단체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3. 2. 15(금) 17:00
 - 장 소 : 문경시청 제2회의실
 - 참 석 : 이시하 의원

- **제2회 낙동강 연날리기 대회 참석**
 - 일 시 : 2013. 2. 16(토) 13:00
 - 장 소 : 낙단보 체육공원
 - 참 석 : 한재석 의원

- **제구봉화군향우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3. 2. 16(토) 16:00
 - 장 소 : 대구 프린스호텔
 - 참 석 : 권영만 의원

- **홍해청년회 지역 어르신 신년세배 참석**
 - 일 시 : 2013. 2. 17(일) 11:00
 - 장 소 : 홍해 실내체육관
 - 참 석 : 한창화 의원

- 한국농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 제14·15대 연합회 및 읍면 신규임원 이·취임식
 - 일 시 : 2013. 2. 18(월) 11:30
 - 장 소 : 영덕 마이웨딩
 - 참 석 : 김기홍 의원

- 2013년 안동시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3. 2. 20(수) 10:00
 - 장 소 : 안동시민회관
 - 참 석 : 이영식 의원

- 청송군 부남면 건강증진실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3. 2. 20(수) 11:30
 - 장 소 : 부남면 대전2리 건강증진실
 - 참 석 : 김영기 의원

- 2013년 건강마을 만들기 출범식 참석
 - 일 시 : 2013. 2. 20(수) 14:00
 - 장 소 : 경산시립박물관
 - 참 석 : 김창숙 의원

- 포항시장배 동계리그 중·고교 야구대회 참석
 - 일 시 : 2013. 2. 20(수)
 - 장 소 : 포항야구장
 - 참 석 : 장세현 의원

- 한국여성농업인 경주시연합회 제1·2대 회장단
이·취임식
 - 일 시 : 2013. 2. 21(목) 11:00
 - 장 소 : 경주시 농어민회관 대연수관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군위인재양성원 개원식 참석
 - 일 시 : 2013. 2. 21(목) 15:00
 - 장 소 : 군위인재양성원
 - 참 석 : 홍진규 의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5대 경산지부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2. 21(목) 19:00
 - 장 소 : 경산컨벤션웨딩
 - 참 석 : 윤성규 의원

- 김천 양금동 주민안녕기원대제 및 지신밟기 행사
 - 일 시 : 2013. 2. 21(목)
 - 장 소 : 하로마을 사모바위
 - 참 석 : 배수향 의원

- 의성군새마을회 핵심지도자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3. 2. 22(금) 10:00
 - 장 소 : 봉양 탑산온천 대강당
 - 참 석 : 나현아 의원

- 경북농민사관학교 상주시 수료생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3. 2. 22(금) 10:00
 - 장 소 : 상주 농업기술센터
 - 참 석 : 장영석 의원

- 월남참전전우회 영천시지회 제20차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3. 2. 22(금) 11:00
 - 장 소 : 영천시 재향군인회관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 성주군태권도협회 회장 이·취임식
 - 일 시 : 2013. 2. 22(금)
 - 장 소 : 성주웨딩
 - 참 석 : 박기진 의원

-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구미소방서 격려 방문
 - 일 시 : 2013. 2. 23(토) 16:00
 - 장 소 : 구미소방서
 - 참 석 : 변우정·심정규·장영석 의원

- 2015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 후원의 밤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2. 23(토) 18:00
 - 장 소 : 문경실내체육관
 - 참 석 : 고우현 의원

- 제19회 예천군민 민속놀이대회 참석
 - 일 시 : 2013. 2. 24(일) 10:00
 - 장 소 : 학생실내체육관
 - 참 석 : 도기욱 의원

- 영양군 정월대보름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2. 24(일) 10:00
 - 장 소 : 영양군민회관
 - 참 석 : 이상용 의원

- 정월대보름 축제(금오대제) 참석
 - 일 시 : 2013. 2. 24(일) 10:00
 - 장 소 : 금오산 잔디밭
 - 참 석 : 이태식 의원

- 의성 점곡면 정월대보름행사 참석
 - 일 시 : 2013. 2. 24(일) 13:00
 - 장 소 : 의성 점곡면 신문화공간
 - 참 석 : 이왕식 의원

- 제6회 정월대보름 사동 달맞이 놀이마당 참석
 - 일 시 : 2013. 2. 24(일) 15:00
 - 장 소 : 울릉 사동면 신항
 - 참 석 : 이용진 의원

- **청도 정월대보름 민속문화축제**
 - 일 시 : 2013. 2. 24(일) 16:00
 - 장 소 : 청도천 둔치
 - 참 석 : 김하수·박권현 의원

- **제15회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 일 시 : 2013. 2. 24(일) 16:00
 - 장 소 : 경산시 남천면 산정리 남천
 - 참 석 : 서정숙 의원

- **대통령 취임 구미시민 민속놀이행사 참석**
 - 일 시 : 2013 2. 25(월) 09:00
 - 장 소 : 박정희대통령 생가
 - 참 석 : 구자근 의원

- **구미소방서 선산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2. 26(화) 11:00
 - 장 소 : 선산119안전센터
 - 참 석 : 김봉교 의원

- **경산시 당정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3. 2. 27(수) 16:30
 - 장 소 : 경산시청 대회의실
 - 참 석 : 김세호 의원

- **시각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신년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3. 2. 28(목) 10:00
 - 장 소 : 문경 황제웨딩홀
 - 참 석 : 이경임 의원

- **영덕군 수산경영인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2. 28(목)
 - 장 소 : 영덕군 병곡면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 **2013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참석**
 - 일 시 : 2013. 2. 28(목) ~ 3. 3(일)
 - 장 소 : 울진군 후포항 왕돌초광장
 - 참 석 : 황이주 의원

- **2013년 상반기 여성문화회관 교육 개강식 참석**
 - 일 시 : 2013. 3. 5(화) 10:00
 - 장 소 : 포항 문화예술회관 대강당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 **영천 여성 농업인 총회 참석**
 - 일 시 : 2013. 3. 5(화) 11:00
 - 장 소 : 영천농업기술센터
 - 참 석 : 김수용 위원장

- 영주시선관위↔영주시다문화지원센터 MOU체결식 참석
 - 일 시 : 2013. 3. 5(화)
 - 장 소 :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 참 석 : 김종천 의원

- 경주시 실적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3. 3. 6(수) 11:00
 - 장 소 : 산내읍사무소
 - 참 석 : 이 달 의원

- 포항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3. 6(수) 11:00
 - 장 소 : 포항시 청솔관
 - 참 석 : 김말분 의원

VI. 5분 자유발언

□ 2013년 3월 26일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박진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응급의료체계 구축>>

영덕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경북의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인 영덕에서 유일하게 야간 응급실을 운영하여 오던 영덕 아산 병원이 5월부터 의료진 미확보 등으로 응급실을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를 철회해달라는 지역민들의 간곡한 뜻이 받아들여져 아산병원측은 아산 정주영 설립자의 사회복지 환원사업의 뜻에 따라 외래진료와 응급실은 지속적으로 운영 키로 하여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것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면 인구 41,000여 명의 영덕군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어서 응급환자가 목숨을 담보로 50km 이상 떨어진 포항까지 가야만 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사례와 같이 의료취약지역이 많은 경북에서 똑같은 위기상황이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현실에서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도내 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년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 의성, 영양, 영덕 3곳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군위, 의성 등에는 공중보건의마저 배치되지 않아 심각한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기준 도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률은 52%로 전남(24.3%), 경남(40%), 충북(50%)에 이어 전국의 하위권에 속하며 특히 시부를 제외한 군부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은 전체 13곳 중에 청송, 고령, 성주, 울릉의 4곳에 지나지 않아 의료서비스의 심각한 지역적 편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숨통을 트여왔던 공중보건의 배치마저도 이제 어렵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제, 의과대학 여학생 증가 등에 따라 2010년에 716명이던 공중보건의가 2012년 현재는 553명으로 163명이 감소하였고 2010년부터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 추가 배치가 중단되어 도내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운영에 막대한 차질 혹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우선 공중보건의 배치에 있어 의료취약지 응급실에 공중보건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공중보건의가 없을 경우 매년 도비 8억여 원 정도를 확보하여 의사와 간호사 등 대체인력운용을 해서라도 야간응급실 운영이 지속

되도록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는 그 지역 내에 있는 보건소나 민간의료기관, 군병원 등에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 응급의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누구라도 응급의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 구축계획에 지금부터라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응급의료체계의 부실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사망으로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응급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민복지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옥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청소년 문제예방을 위한 ‘감사운동’ 전개 촉구 >>

포항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채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2010년 인구 10만 명당 33.5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또한, 2012년 청소년 통계를 보면, 청소년의 8.8%가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으며, 그 원인은 주로 학교폭력과 생활 스트
레스라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한 달간 전국 초등
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560만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 139만 명의
학생들이 실태조사에 참여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12.3%인
17만 명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경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학교폭력으로 경산의 고교생이 자살하는 충격
적인 사건이 우리지역에서 발생하여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살과 학교폭력문제 등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인성교육이야말로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동안 인성교육을 교육기관에 떠넘기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가정은 수수방관만 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요즘, 모두들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부딪히고, 도우면서 행복을 느끼는 우리 경상북도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구상 거의 모든 부모들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말의 순서는 똑같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다음으로 가르치는 말이 ‘고맙습니다’라고 합니다.

‘고맙다’라는 말은 “남이 베푼어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5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말은 10% 안팎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감사하다’라는 말은 남을 기쁘게 하고,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와 나를 기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감정이면서, 동시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출신지역의 이야기입니다만, 최근 포항시에서는 감사와 긍정의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서,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감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감사엽서 쓰기, 가족간의 100감사 전달, 칠순잔치 부모님 100감사 전달, 감사 결혼식과 같은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청소년 폭력예방과 인성교육 수단으로 감사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200여 개가 넘는 여러 지자체와 기관단체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운동에 이어, 감사운동이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읽었던 좋은 글귀를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벽을 허무는 망치와 같아서 얼어버린 가슴을 갈라놓을 수도 있고, 살얼음처럼 얇은 경계심도 풀어버릴 수 있다. 내가 먼저 감사의 인사를 건넨다면 세상은 늘 화창한 봄일 것이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나의 감사인사 한 마디가 퍼져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면, 우리사회의 큰 아픔인 자살과 청소년 문제도 해결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지나온 삶의 발자취에 내 삶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과 사건들에게, 오늘 바로 부모님께,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봤으면 합니다. 이러한 감사운동을 우리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영일만의 기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우리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우리 경상북도가 이제는 새마을 운동인 '감사운동'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왕식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참전유공자의 사회적 예우와 지원 >>

의성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올해로 6.25전쟁은 정전 60주년을 맞습니다만, 현재의 대한
민국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인 전쟁의 상흔을 딛고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지난날 고난의 역사 속에서 온 몸을 바쳐 전쟁터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1964년부터 8년 8개월 동안 연인원 32만 명의 월남전
참여는 세계평화와 자유수호의 십자군으로서 외화 획득과 대한
민국의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국가를 위해 피땀을 흘리시고 희생한데 대하여 그 후손이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함은 지극히 마땅한 도리라고 할 것이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은 그들의 희생에 비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 경북도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우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 기준으로 24,819분의 참전유공자에 대비 29억여 원의 예산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월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 처음 지급된 이후 그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도내 6.25 참전 유공자는 대부분 평균 80세 이상의 고령자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느라 돈 벌 기회가 없었고, 돈이 없다 보니 자녀교육을 잘 시킬 수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소외되고 지친 마음과 정신을 감당하지 못해 병원 신세를 지거나 세상을 떠나시는 참전유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참전 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을 실질적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동 조례 제8조에는 현재 도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으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유공자들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에 연령제한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정상 여건이 허락한다면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사회적 예우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하고 보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대한민국의 발전이 선열들의 거룩한 나라사랑 정신이 초석이 되었음을 모르고 고귀한 위국헌신(爲國獻身)의 정신을 기려나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난이 닥쳐 과연 어느 누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평소 김관용 도지사께서는 경북도를 호국평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만 그에 걸맞게 6.25 참전유공자들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수준의 예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홍진규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대한 정책적 제언>>

군위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해 10월, 제258회 임시회에서 동료 서정숙 의원님께서 “팔공산 국립공원화”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도지사께서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팔공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구시와 공조해서 관계부처 협의 등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의회차원에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자연공원생태연구회를 구성하여, 지난 1월에는 사례연구를 위해서 광주 무등산을 현지 답사하였고, 2월에는 ‘팔공산의 가치와 국립공원 승격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도민들은 물론, 학계, 언론 등에서도 팔공산에 대한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를 깊이 인식한 끝에, 지난 3월 6일에는 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팔공산 국립공원 범 시·도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 추진위원회의 대규모 결의 대회, 시·도민 서명운동 전개 등 향후계획을 미루어 볼 때, 지역사회의 여론과 움직임 역시 대단히 활발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께서 답변하셨던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공감과 지지 속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기관·단체와 소통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도는 팔공산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관내 4개 시·군이 걸쳐 있어서, 국립공원 승격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 더욱 그러합니다. 광주 무등산은 10년 전부터 순수 민간단체에서 시작하여 국립공원 승격까지 실제 추진한 기간만 해도 무려 2년 6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무등산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 시·도민의 힘을 모은다면, 광주보다는 훨씬 빠른 승격을 이룰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연공원생태연구회 회원으로서 그간 우리 회원들과 함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 깊게 논의했던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자연생태, 환경, 지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즉각 팔공산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실태조사는 국립공원 추진의 기초 자료이자 팔공산의 중장기적 보전·관리를 위해서라도 전반적인 조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1994년 이후, 20년이 흐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팔공산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둘째, 도청 담당부서와 팔공산을 점유하고 있는 영천, 경산, 군위, 칠곡 등 4개 시·군의 담당공무원으로 조직된 국립공원 승격지원 T/F 팀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하여, 국립공원 승격에 대한 시·군 의견조율, 지역여론 수렴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난해 12월에 경북도와 대구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 하였습니다. 이는 팔공산 국립공원화의 시발점이라 생각되며 참으로 반갑고 잘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 도가 대구시와 함께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북·대구 경제협력 공동과제에 '팔공산 국립공원화 공동 추진'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단체와 실무진의 노력 만으로는 광주 무등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세월이 소요 됩니다. 따라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도민의 관심이 확인된 지금부터 지사께서는 대구경북의 광역경제발전 차원에서 준비하셔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이 단순한 경제적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고 목표를 향해 추진하는 과정을 도민과 함께하면서 도민 단합과 자긍심 고취 등 경제적 이익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지역의 막대한 저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역의 팔공산이 국민의 팔공산이 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아낌없는 열정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팔공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희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산불대응 시스템 및 보상대책 관련>>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포항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어 발생하는 도내 산불사고에 대한 도차원의 적극적인 예방시스템 마련과 더불어 신속한 초동대응체계 구축 및 이번 포항 산불사고 피해주민들의 적극적인 보상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9일 발생한 포항 산불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또한 안타까운 재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상자 27명, 이재민 58세대 112명을 비롯하여, 주택 111채와, 산림 피해면적이 82ha에 달하는 등 대형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피해지역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생활 터전을 잃어버린채 고통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주택단지가 밀집한 도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써, 무엇보다 신속한 초동대응 및 소방력을 집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소화전과 급수체계, 소방차 현장접근을 어렵게 한 차량정체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긴급대피령, 시민들의 미숙한 위기대응의식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소방관들이 투입되다 보니 관할지역이 아니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방화선 구축만 할 뿐 적극적으로 진화를 하지 않았고, 안내방송이나 비상연락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화재진압 위기대응 매뉴얼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들을 볼 때 본 의원은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더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던, 화재발생지역 일부 시민들과 많은 자생단체 봉사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화재진압에 적극적이지 아니한 모습을 보이는 등 시민들의 공동위기대응훈련 부재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산불은 중학생의 불장난으로 시작된 인재인 관계로 특별재난지역 지정대상이 아니 되어서 피해주민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건물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며 거주하는 주민 역시 저소득층과 세입자, 노약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이번 포항산불 사태를 진두지휘해야 할 콘트롤 타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점을 볼 때, 무엇보다 위기관리 매뉴얼과 지휘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부족한 소방장비 및 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화재발생 후 초기 20분간의

진압이 상당히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소방헬기의 경우, 헬기 요청 후 40분 이상, 상황발생 1시간 정도 후라야 현장 도착이 가능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야간산불 발생 시에는 속수무책인 현실에서 산불진화를 위한 출동이 가능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및 사찰과 공공건물 등에는 소화전을 설치해서 신속한 화재진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과 같이 임야와 가까운 밀집된 일반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호스를 소화장치에 설치하고, 각 읍·면·동 별로 1톤 미만 소형산불소방차를 배치하여 화재 발생시 조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과 장비의 효율적인 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위기상황에 대비한 전 도민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민방위 훈련참여와 위기대응 시스템의 접목을 통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등으로 숙달된 응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공무원들이 해야 한다는 안이한 사고에서 벗어나 도민들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번 피해지역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보상대책 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개발시대에 양산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부분 주택정비보완사업 및 최소한의 세금징수 등 기본조치로 일정한 보완조건을 갖추도록 하여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킬 수도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터전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사태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산불 예방 시스템과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12건
- 규약안 : 1건
- 동의안 : 1건

▣ 조 례 안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3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변인실”을 “대변인”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감사관실”과 “경북도립대학”을 “감사관”과 “경북도립대학교”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가목 중 “문화체육관광국, 환경해양산림국, 환경특별관리단, 보건환경연구원”을 “문화체육관광국,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6호 가목 중 “도청이전추진본부, 건설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방본부”를 “도청이전추진본부, 건설도시방재국, 소방본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3 조(상임위원회의 직무과 그 소관)</p> <p>1. (생략)</p> <p>2. 기획경제위원회 가.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관한사항</p> <p>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가. 감사관실, 여성정책관, 보건복지국, 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관한사항</p> <p>4. 문화환경위원회 가. 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림국, 환경특별관리단, 보건환경연구원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관한사항</p> <p>5. (생략)</p> <p>6. 건설소방위원회 가. 도청이전추진본부, 건설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방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관한사항</p>	<p>제 3 조(상임위원회의 직무과 그 소관)</p> <p>1. (현행과 같음)</p> <p>2. _____ 가.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_____</p> <p>3. _____ 가. 감사관, 여성정책관, _____ 경북도립대학교 _____</p> <p>4. _____ 가. 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그 지도감독을 _____</p> <p>5. (현행과 같음)</p> <p>6. _____ 가. 도청이전추진본부, 건설도시방재국, 소방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_____ _____</p>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3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도민들에게 공개 함으로써 공무원과 도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도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3. 도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방법) 도지사는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도지사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

제5조(성과금 지급 등) ①도지사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상북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로 수정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 3 조(공개방법) 도지사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 3 조(공개방법) 도지사는…… 공개할 수 있다.	자구 수정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3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종교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으로 하고, 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p><u>제10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한의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을 연장하는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삭제〉</p>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3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 준	금 액
【증 명】		
1. <삭제 '85. 3. 30>		
2.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300원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	1통	300원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300원
(4) <삭제 '85. 3. 30>		
(5) 공사 중 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확인원	1통	300원
(6)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통	300원
(7) 보상금 지불증명	1통	300원
(8) <삭제 '85. 3. 30>		
(9) 공유재산대부(신규) 신청	1건	5,000원
(10) 공유재산대부(연장) 신청	1건	3,000원
3. 자동차 등에 관한 증명		
(1)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000원
(2)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	1통	300원
(3) 경력(운전, 무사고)증명	1통	500원
(4) 운전사 사고 및 법규위반 기록확인 신청서	1통	500원
4. 기타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2) 화재증명	1통	800원
(3) <삭 제>		
(4)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3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삭제 '08. 1. 10>		
(2) 인·허가·등록·지침 등의 대장열람	1건	100원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2. 농수산 관계		
(1) <삭제 2000. 3. 2>		
(2) 농지보전관계 다년생 식물재배 신청	1건	500원
(3) 참견매매주선업의 허가 신청	1건	1,000원
(4) <삭제 2002. 3. 2>		
(5) <삭제 2002. 10. 2>		
(6) 근해어업 허가	1건	2,500원
(7)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설 2000. 3. 2>	1건	2,000원
(8)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신고<신설 2000. 3. 2>		
(가) 비료생산업 등록	1건	20,000원
(나)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기계(전자)공업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건	1,000원
(2) 자가용 전기공작물 공사계획 인가 및 변경신청	1건	1,000원
(3) <삭제 2001. 10. 4>		
(4)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1건	500원
(5) 공장입지 지정 신청	1건	1,000원
(6)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신설 2001. 10. 4>	1건	30,000원
(7) 주유소<신설 2001. 10. 4>	1건	20,000원
(8) 용제판매소·부생연료류판매소<신설 2001. 10. 4>	1건	10,000원
4. 건설기계		
(1) 중기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	1건	1,000원
(2) 중기저당권의 변경 또는 말소신청	1건	1,000원
(3) <삭제 '85. 3. 30>		

구 분	기 준	금 액
5. 보건사회위생관계		
(1)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허가 신청	1건	500원
(2)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당의 설치 허가증의 재교부	1건	500원
(3)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원
(4)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원
(5)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허가사항의 변경	1건	40,000원
(6)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응시	1건	3,000원
(7)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8) <삭제 '08. 1. 10>		
6. 관광운수관계		
(1) <삭제>	<삭제>	<삭제>
(2) <삭제>	<삭제>	<삭제>
(3) <삭제>	<삭제>	<삭제>
(4) <삭제 '85. 3. 30>		
(5) <삭제>	<삭제>	<삭제>
(6) <삭제>		
(가) <삭제>	<삭제>	<삭제>
(나) <삭제>	<삭제>	<삭제>
(다) <삭제>	<삭제>	<삭제>
(7) <삭제 '04. 8. 2>		
(8) <삭제 '04. 8. 2>		
7. 문화예술관계		
(1) 공연자 등록신청	1건	2,000원
(2) 공연자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300원
(3) 각본 등 심사신청	1건	1,000원
(4) 영사기사 면허시험 응시신청	1건	2,000원
(5) 영사기사 면허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6) 영사기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1건	2,000원
(7) 사회단체 지부 등록신청	1건	6,000원
(8) 사회단체 지부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원
(9) 문화재 매매업 허가신청	1건	500원
(10) 출판사 등록	1건	500원
(11)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음악영상물작업 또는 배부업 신고	1건	20,000원
(12)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부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8. <삭제 '85. 3. 30>		
9. 체육시설업 관계<신설 '97. 11. 6>		
(1) 골프장 및 스키장업		
(가) 사업계획승인신청	1건	100,000원
(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1건	30,000원
(다) 등록신청	1건	50,000원
(라)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2)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가) 사업계획승인신청	1건	50,000원
(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1건	20,000원
(다) 등록신청	1건	30,000원
(라)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3) <삭제 '08. 1. 10>		
(가) <삭제 '08. 1. 10>		
10. 지적관계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원
11. 전기공사업 관계		
(1) 공사업의 등록신청	1건	40,000원
(2)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1건	30,000원
(3) 공사업의 승계 신고		

구 분	기 준	금 액
(가) 공사업의 양도·양수	1건	30,000원
(나) 공사업의 상속신고	1건	5,000원
(다) 공사업의 법인합병·분할	1건	30,000원
(4) 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가) 양도·양수, 상속, 법인합병에 따른 재교부	1건	5,000원
(나)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함에 따른 재교부 다만, 제11호 (2), (3)목의 수수료는 공사업자 단체에서 현금 징수함.	1건	5,000원
12. 전력기술 관계		
(1) 설계업의 등록신청		
(가) 종합	1건	50,000원
(나) 전문1종	1건	30,000원
(다) 전문2종	1건	20,000원
(2) 설계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가) 종합	1건	45,000원
(나) 전문1종	1건	25,000원
(다) 전문2종	1건	15,000원
(3) 감리업의 등록신청		
(가) 종합	1건	50,000원
(나) 전문	1건	30,000원
(4)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가) 종합	1건	45,000원
(나) 전문	1건	25,000원
(5) 설계·감리업의 변경등록		
(가) 재발급	1건	5,000원
(나) 변경등록신고(기술인력 변경 제외)	1건	5,000원
13. 승강기 관계		
(1) 승강기보수업 등록	1건	50,000원
(2) 승강기보수업 변경 등록	1건	20,000원
(3)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3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 등의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함으
로써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을 말한다.
3. “장기 등 기증자”란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등의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
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란 장기 등 기증 희망자의 신청 내용의 접수와 신청내용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이첩하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들이 동참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 등의 기증 장려 계획 수립) 도지사는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도지사는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관계 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용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상북도의 보건 관련 업무 담당 국장
 4. 종교단체 지도자
 5.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장이 추천한 사람
 6. 관련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7.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장기 등의 기증 접수·등록 창구 설치) ①도지사는 장기 등의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 등의 기증 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장기 등의 기증 접수·등록창구 설치·운영을 시장·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도지사는 장기 등의 기증을 확산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
2. 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의 감면

②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 8 조(장기 등의 기증 사업 홍보) ①도지사는 장기 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2. 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도내 버스정류장 주변 등
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또는 공간

제9조(장기 등의 기증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는 장기 등의 기증 장려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①이 조례에 따른 장기 등의 기증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장기 등의 기증 권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3항부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규정한다.
 -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용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상북도의 보건 관련 업무 담당 국장
 4. 종교단체 지도자
 5.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장이 추천한 사람
 6. 관련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7.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p>제 5 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p> <p>①<생략></p> <p>②<생략></p> <p>③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 5 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p> <p>①<제정안과 같음></p> <p>②<제정안과 같음></p> <p>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상북도의 보건 관련 업무 담당 국장 4. 종교단체 지도자 5.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장이 추천한 사람 6. 관련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7.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p>⑤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p>	<p>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p>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3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 운동의 유지·발전 및 확산에 필요한 새마을지도자 양성과 국내외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경상북도새마을회(산하조직 포함)와 새마을지도자 양성기관 및 새마을교육·연수기관을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경상북도새마을회 또는 시·군새마을회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새마을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을 유지·발전 및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새마을 기반 확충 사업
3. 주민참여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사업
4.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의식 함양 사업
5.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사업
6.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및 국제협력 사업
7. 경상북도 새마을 역사관 운영 사업
8. 새마을지도자 대학 운영 및 새마을 아카데미 운영 사업
9. 새마을 교육 및 연수기관 운영 사업
10. 그 밖의 새마을 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새마을운동 조직) ①새마을운동 조직은 새마을운동 확산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새마을운동 조직은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회원의 양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새마을운동 조직은 다른 지역 새마을운동 조직간의 교류 및

회원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마을사업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새마을운동과 사업에 상호협력하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새마을지도자 양성) 도지사는 새마을사업의 확대와 운동 확산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양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교육) 도지사는 새마을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대학(대학원 포함)과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 장기과정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새마을지도자대학 운영)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선도하는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정예화된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단기과정의 새마을지도자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①도지사는 저개발국가의 성장을 지원하고, 세계빈곤 퇴치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보급할 수 있다.

②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 공무원 및 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
2. 국내 거주 해외유학생 새마을교육
3. 해외 현지 새마을교육
4. 대학생 해외 새마을봉사단 운영
5. UN, KOICA 등 국제협력 기구와 연계한 국제협력사업

③도지사는 효율적인 새마을 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새마을운동 해외봉사단) ①도지사는 새마을운동 해외 보급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해외봉사단(이하 “해외봉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해외봉사단의 파견지역, 규모, 기간, 지원내용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해외봉사단이 봉사활동 기간내에 발생하는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및 후송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새마을회원이 새마을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2. 그 밖의 새마을운동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2조의 제목 “예우”를 “포상 등”으로 하고, 본문 중 “예우를”를 “포상 등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비고
<p>제12조(예우) 도지사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p> <p>1. <생략> 2. <생략></p>	<p>제12조(포상 등) ----- ----- -----</p> <p>포상 등을 -----.</p> <p>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p>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3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 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 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 활동

4. 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해설 활동

제5조(선발) ①도지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체육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관광체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직무교육 및 평가) ①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직무교육 과정 및 평가는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표식) ①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원 등)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 및 시·군의 운영계획에 따른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에 대한 실비

2. 문화관광해설사가 역량 증진을 위하여 자료 수집 및 관광객들에 대한 해설을 목적으로 도내 문화관광지 방문 시, 도내 문화재 관람료, 자연공원, 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3.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비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자격요건을 갖춘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3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호 중 “3억원”을 “연간 3억원”으로 하고,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개설일부터 3년 내로 한다”를 “지원기간은 포항영일만항의 연간 적컨테이너 처리 화물량이 20만 티이유 (TEU)에 최초로 도달한 연도까지로 한다”로 하며,
- 같은 조 제3호 중 “지원기간은 연간 처리화물량이 20만 티이유(TEU)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를 “지원기간은 포항영일만항의 연간 적컨테이너 처리 화물량이 20만 티이유 (TEU)에 최초로 도달한 연도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3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에서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사.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

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군수의 책무)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시·군 보행환경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보행안전문화 시책추진) 도지사는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의 주민 참여 확대, 보행자길에서의 통행 불편 사례 및 개선 의견 접수 등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의 현황
3.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4.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도시·군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행환경기본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①도지사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보행자길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 주변 통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내에 위치한 「도로법」 제8조의 도로 중 보도가 없는 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4.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량, 다리 등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차 없는 거리의 구성에 관한 사항
 8.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③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도지사는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여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에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활동 장려 등) ①도지사는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주민의 걷기운동 장려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도지사는 주민의 자발적인 보행환경 개선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3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1(학원자율정화위원회운영) ①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자율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정화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의1..... (신설).....</p>	<p>제14조의1(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①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정화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3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 및 본청 담당관·과장이 된다”를 “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총무과장, 학교지원과장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2항의 “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 총무과장, 학교지원과장이 된다.”를 “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총무과장, 학교지원과장이 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p> <p>①(생략)</p> <p>②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 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및 본청 담당관·과장이 된다.</p> <p>③~⑦(생략)</p>	<p>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p> <p>①(현행과 같음)</p> <p>②_____</p> <p>_____</p> <p>_____</p> <p>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 총무과장, 학교지원과장이 된다.</p> <p>③~⑦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p> <p>①(현행과 같음)</p> <p>②_____</p> <p>_____</p> <p>_____</p> <p>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 <u>과학직업교육과장</u>, <u>체육건강과장</u>, 총무과장, 학교지원과장이 된다.</p> <p>③~⑦(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3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폐합되는 학교 등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폐합”이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
장을 포함다)를 통합하여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폐지된 학교의
학구에 거주하는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3. “폐지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학교를 말한다.

4. “통폐합 학교군”이란 통합학교 및 폐지학교를 말한다.
5. “통폐합 지원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을 말한다.
6. “관할청”이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 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한 학교 통폐합 등의 지원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외부 지원금

제4조(기금의 계정) 기금은 통폐합 학교군별로 계정을 둔다.

제5조(기금의 용도 및 범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통합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사업
2.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②제1항 각 호의 배분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통합학교 학교장은 매년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매년 제1항 및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을 통합 작성하고, 교육장은 통합 작성된 사업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계획과 제5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시설비 및 교육활동 지원비로 구분하고, 교육활동 지원비는 장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예산을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 등을 둘 수 있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8조(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때에 폐쇄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관련 외부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기금설치 및 지원 대상학교는 2013학년도에 통폐합된 학교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안 제6조제2항의 “제5조제1항제2호·제3호의 사업계획”을 “제5조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으로 하고

안 제6조제3항의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계획”을
“제5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으로

안 제6조제4항의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을 “제5조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으로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 1 조(목적)~제 4 조(기금의 계정) 〈생략〉</p> <p>제 5 조(기금의 용도 및 범위) ①〈생략〉</p> <p>1.~2. 〈생략〉</p> <p>3. 폐지학교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폐지학교 시설 활용 지원사업</p> <p>4. 통합학교와 같은 시·군에 있는 학교의 교육여건개선 지원사업</p> <p>5. 〈생략〉</p> <p>②〈생략〉</p> <p>제 6 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생략〉</p> <p>②관할청은 매년 제1항 및 제5조제1항 제2호·제3호의 사업계획을 통합 작성하고, 교육장은 통합작성된 사업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계획과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④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시설비 및 교육활동 지원비로 구분하고, 교육활동 지원비는 장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⑤〈생략〉</p> <p>제 7 조(기금의 관리·운용)~제12조(시행규칙)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 1 조(시행일)~제 2 조(적용례)〈생략〉</p>	<p>제 1 조(목적)~제 4 조(기금의 계정) 〈원안과 같음〉</p> <p>제 5 조(기금의 용도 및 범위) ①〈원안과 같음〉</p> <p>1.~2. 〈원안과 같음〉</p> <p>3. 〈삭제〉</p> <p>4. 〈삭제〉</p> <p>5. 〈안 제5호와 같음〉</p> <p>②〈원안과 같음〉</p> <p>제 6 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원안과 같음〉</p> <p>②관할청은 매년 제1항 및 제5조제1항 제2호의 사업계획을 통합 작성하고, 교육장은 통합작성된 사업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계획과 제5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④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시설비 및 교육활동 지원비로 구분하고, 교육활동 지원비는 장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⑤〈원안과 같음〉</p> <p>제 7 조(기금의 관리·운용)~제12조(시행규칙) 〈원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 1 조(시행일)~제 2 조(적용례) 〈원안과 같음〉</p>

≡ 규 약 안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를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조합회의는 19인의 위원으로”를 “조합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3 조(조합의 구성)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u>울산광역시</u>,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p> <p>제 6 조(조합회의의 구성) ①(생략) ②조합회의는 1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3. 생략 ③(생략) ④(생략)</p>	<p>제 3 조(조합의 구성)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u>울산광역시</u>,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p> <p>제 6 조(조합회의의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조합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3.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p>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地方債)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預置金)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호의 기금은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제20조(발전기금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①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조합은 발전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은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17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발전기금 출연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9조의5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발전기금은 제18조제4호에서 규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용도로만 활용하되, 재정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1조(조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12조(전문기관) ①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②조합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12조의2(출연금) ①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8]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②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2. 8>

③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0. 2. 8]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①발전기금은 재정 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한다.

②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의 지원은 재정지원계정으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0. 2. 8]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3호에 따른 출연금
2. 법 제17조의2제6호에 따른 운용수익 중 재정지원계정의 운용수익
3. 융자관리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본조신설 2010. 2. 8]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재원
2. 법 제17조의2제6호에 따른 운용수익 중 융자관리계정의 운용수익 [본조신설 2010. 2. 8]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발전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개정2010. 2. 8>

②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8> [제목개정 2010. 2. 8]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조합의 장은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에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하여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②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인 용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용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을 용자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16조(발전기금예치금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①법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이하 “발전기금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②발전기금예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 등을 기준으로 조합회의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발전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③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0. 2. 8]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①발전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예치금을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조합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목개정 2010. 2. 8]

부 칙<제22024호, 2010.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6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1항과 제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 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61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②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9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①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
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
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지방자치
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
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설치 등) ①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관할구역) ①충청남도의 연기군을 폐지한다.

②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충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충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충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③충청북도 청원군과 충청남도 공주시의 관할구역에서 다음의 지역은 각각 제외한다.

<p>충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지역</p>	<p>충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p>
<p>충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제외되는 지역</p>	<p>충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p>

제7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 ①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②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도의회의원 또는 시·군·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③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④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시·도의회 또는 시·군·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시·도의 조례·규칙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다른 법령에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광역시세 또는 구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 제159조의5(과세표준 및 세액)** ①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 ②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동 의 안

- 중국 섬서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중국 섬서성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3월 2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중국 섬서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 제안이유

- 가. 중국 섬서성은 고대문화의 발상지이자 당나라의 옛 수도인 서안(경주시 자매체결도시)이 소재한 곳으로 과거 우리 지역의 신라와 실크로드를 통해 다양한 교류가 있었으며 중국과 서역의 이국문화를 흡수하여 우리 지역문화를 다채롭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곳
- 나. 최근 서부대개발 정책의 중심지역으로서 중국정부에서 북경, 상해 다음으로 서안을 인구 1,500만 명의 3대 도시로 건설할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떠오르는 신흥경제 개발지역이자 삼성전자가 서안에 70억 달러 투자하면서 향후 3만 5천명의 한인사회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
- 다. 우리 도가 추진하려는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중국 섬서성은 핵심지역이자 향후 실크로드 동단

기점을 경주로 세계가 공인하는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해야 할 지역임.

2. 주요내용(추진현황)

- 가. 중국 섬서성과 「문화교류의향서」 체결('05. 9)
- 나. 섬서성 수리청 대표단(27명) 우리 도 방문('05. 11)
- 다. 섬서성 초청 양릉농업박람회 민간인 새마을 전문가(1명) 참석('06. 11)
- 라. 동북아비즈니스촉진회의 섬서성 상무청 대표단(10명)참가('06. 12)
- 마. 경북도의회 행정위원회 일행(16명) 섬서성방문('07. 4)
- 바. 한국어연수과정 섬서성 공무원 초청(2명)('05. 7)
- 사. 제9차 NEAR 총회 개최 시, 주서안총영사 자매결연 체결 제안('12. 7)
- 아. 도 담당자 섬서성 및 주서안총영사관 방문('12. 8)
- 자. 제6회 중국서부문화산업박람회 영천국악단(사물놀이패) 파견('12. 9)
- 차.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도 대표단 방문('12. 10)
- 카. 실크로드 학술회의 중국 섬서성에서 개최('12. 12)
- 타. 의회 동의 후, 4월에 중국을 방문하여 자매결연 체결 추진
- 파. 경상북도·중국 섬서성 간 자매결연 체결 및 그랜드 바자르 사업 추진('13. 4)

도와 중국 섬서성과의 비교

구 분	경상북도	중국 섬서성
면 적	1.9만km ²	20.58만km ² (황하중류)
인 구	272만명	3,742만명
행정구역	10개시, 13개 군, 1개 출장소, 338개 읍면동	11개 시
경제현황 (GDP)	83조 3,680억원	약 175조 8,300억원

도내 시·군과 섬서성(시)과의 자매결연 체결현황

- 경주시(서안시, '94. 11. 18)
- 의성군(함양시, '03. 10. 17)
- 봉화군(동천시, '97. 6. 20)

3. 자매결연 체결 예상일자 - 2013년 4월경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 3 절 권 한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의정 활동 보고서

(제260회 임시회·제261회 임시회)



2013. 4 인쇄 / 2013. 4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284

FAX : 602-5140



<비매품>



İSTANBUL-GYEONGJU
DÜNYA KÜLTÜR EXPO 2013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경상북도는 2013년 9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경주세계 문화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 행사명 :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 기간 : 2013. 8. 31 ~ 9. 22 (23일간)

· 장소 : 터키 이스탄불시가지 일원

· 주제 : "길, 만남 그리고 동행"

· 행사 프로그램(9개 분야 30여개 프로그램)

공 연 _ 한터 전통문화공연·오페스트라합동공연

전 시 _ 한국문화관, 예술교류전

영상·채널 _ 영화축제, 한터 전통문화체험

특별 행사 _ K-POP, 세계민속공연축제 등

의경-화동-인교

